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염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28

발의연월일: 2025. 4. 1.

발 의 자 : 염태영 · 맹성규 · 박정현

이해식 · 김우영 · 김준혁

정태호 • 박민규 • 김남근

안태준 · 신정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.

또한,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.

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,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및 영업정지, 과대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행위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,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계약한 후 시공자에 통보하고, 중요한 공정의 안전점검은 공공이 참관

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2항제8호, 제37조제3항, 제39조제6항제4호, 제62조제5항·제6항, 제89조제5호의2·제5호의4, 제91조제3항제15호 신설 및 제62조제4항, 제91조제2항제3호·제3호의2·제3호의3, 제91조제3항제12호의2·제14호·제16호 개정).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(이하 "안전점검 수행기관"이라 한다)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대상을 누락하거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한 경우
 - 나.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
 - 다. 제62조제8항에서 정하는 기술인 등급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한 경우
 - 라. 제62조제1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

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4항의 안전점검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비는 제62조제8항에 따른다.
- 제39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4.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가 적합하게

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

제62조제4항 후단 중 "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(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)가"를 "안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, 발주청이 계약을 체결한 후 통보한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그 업무를수행하여야 하며,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·허가기관의장이"로, "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"를 "지정한 안전점검수행기관과 계약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제7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, 해당 인·허가기관의 장(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),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및 시기에 실시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안전점검에 참관하여야 하며, 참관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89조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

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자

5의4.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하거나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한 자제91조제2항제3호 중 "제62조제7항"을 "제62조제9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의2 중 "제62조제14항"을 "제62조제16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의3 중 "제62조제18항"을 "제62조제20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2 중 "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"를 "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"로 하며, 같은 항 제14호 중 "제62조제3항·제5항 및 제8항"을 "제62조제3항·제7항 및 제10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6호(종전의 제15호)중 "제62조제18항"을 "제62조제20항"으로 한다.

15.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적용례)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계에 착수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	제31조(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
등록취소 등) ① (생 략)	등록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·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	2
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	
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	
할 수 있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
	검을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
	링사업자(이하 "안전점검 수
	행기관"이라 한다)가 다음 각
	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<u>경우</u>
	<u>가.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에서</u>
	<u>정하고 있는 점검대상을</u>
	<u> 누락하거나 안전점검을 부</u>
	실하게 실시한 경우
	나.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
	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
	보한 경우
	다. 제62조제8항에서 정하는
	기술인 등급이나 자격이

③ ~ ⑤ (생 략) · ② (생 략) <신 설>

제39조(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) 제39조(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) ① ~ ⑤ (생 략)

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 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 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 <신 설>

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 전점검을 실시하게 한 경

라. 제62조제12항에 따른 적 정성 검토 결과 연 2회 이 상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 우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건설엔지니어링 대가) ① 제37조(건설엔지니어링 대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>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제62조제4항의 안전점검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비는 제62 조제8항에 따른다.

\bigcirc	\sim	(5)	(현행과	같음)
_		<u> </u>	\ \(\(\)	<u> </u>

<u> </u>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

⑦ (생략)

~ ③ (생 략)

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 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(발주 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 기관의 장을 말한다)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 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가 적 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

(7) (현행과 같음)

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①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, 발주청이 계약을 체결한 후 통 보한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발주 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---------지정한

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하여

⑤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 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 자,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(발 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), 건설사업자 또는 주 택건설등록업자에게 대통령령 <신 설>

⑤ ~ ⑱ (생 략)

제8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89조(벌칙) ------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5. (생략) <신 설>

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 여야 한다.

⑥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대상 및 시기에 실시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안전점검에 참관하여야 하며, 참관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 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 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.

⑦ ~ ② (현행 제5항부터 제1 8항까지와 같음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5의2.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 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 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 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 검사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 <u>5의2</u>. (생 략) <신 설>

6. (생 략) 제91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2. (생략)
- 3. <u>제62조제7항</u>에 따른 종합보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
- 3의2. <u>제62조제14항</u>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3의3. <u>제62조제18항</u>에 따른 설 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 한 자

4. • 5. (생략)

거나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부실
하게 실시한 자
<u>5의3</u> . (현행 제5호의2와 같음)
5의4.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
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하
거나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
<u>한 자</u>
6. (현행과 같음)
]9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62조제9항</u>
_
3의2. <u>제62조제16항</u>
3의3. <u>제62조제20항</u>
4.·5. (현행과 같음)

3	じ	- 음	각	호	의	어느	_	하니	ㅏ에
해┖	강さ	하는	자	에 7	게는	30	0년	l 원	0]
하	의	과티	게 금.	릌	부고	가 <i>하</i> 1	다		

1. ~ 12. (생략)

12의2.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 방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<u>기한</u>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입력한 자

13. (생략)

14. <u>제62조제3항·제5항 및 제8</u> <u>항</u>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<신 설>

- 15.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 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- 16. (생략)
- ④ (생 략)

③
1. ~ 12. (현행과 같음)
12의2
기한
내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
13. (현행과 같음)
14. <u>제62조제3항·제7항 및 제1</u> 0항
<u>0 8 </u>
- 15. 제62조제5항에 따라 안전점
<u>검</u> 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
<u>지 아니한 자</u> 16. 제62조제20항
10. <u>/////23_////20.8</u>
 <u>17</u> . (현행 제16호와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